

직인관리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4.4.22.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직인관리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각종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인의 종류)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4.22.>

1. 총장의 인
2. 각 대학원장의 인
3. 각 대학장의 인<신설 2014.4.22.>
4. 각 처장의 인
5. 부속기관장의 인<개정 2014.4.22.>

제3조 (규격)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<별표 1>과 같다.

제4조 (각인) 직인의 각인은 기관명칭, 직위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한글로 가로 쓰되 전서체로 한다.

제4조의 2 (직인의 등록 및 개폐) ① 직인의 신규제작, 개인(改印), 폐기 및 이의 등록, 교부업무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.

- ② 직인의 제작 및 개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각인하여 제작사유와 연, 월, 일 등을 직인대장에 기록하고 인영을 기록한 후 이를 교부받아야 한다.

제5조 (보관 및 관리책임)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총장의 인은 총무팀장
2. 각 처장의 인과 각 대학원장, 각 대학장의 인은 주무팀장<개정 2014.4.22. .>
3. 부속기관장의 인은 주무책임자 다만, 필요에 따라 총무팀장이 일괄 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14. . .>

제6조 (날인) ① 직인 관리자는 결재권자의 결재내용의 합치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.

- ② 직인의 날인은 직위명칭의 끝자가 직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.

- ③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이거나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 하고, 대장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할 것은 해당 대장에 접한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 (직인 대장의 비치) 총무팀장은 <별표 2>에 의한 본 대학교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 삭제

제9조 (직인의 폐기) 기구의 개편이나 직인의 마모로 인하여 직인을 갱신하였을 경우 구 직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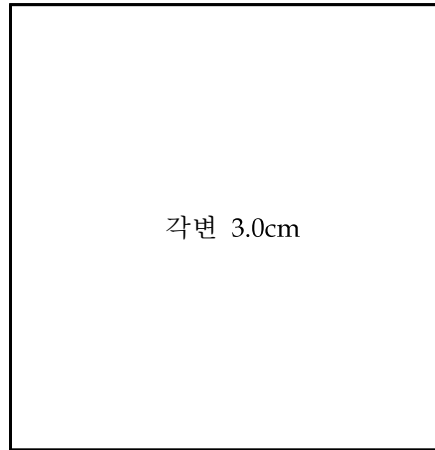
제10조 (직인의 사고) 직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때 직인관수책임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전말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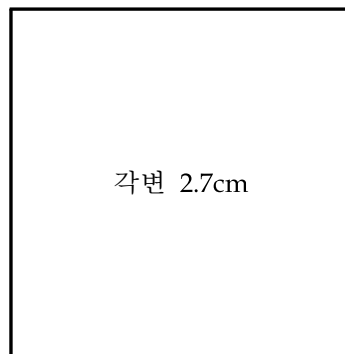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<개정 2014.4.22.>

직인의 규격



총장직인



각 처장, 대학원장,
대학장, 부속기관장의 직인

<별표 2>

직 인 대 장

직인명		관 리 부 서	
등 록 직 인	(인영)	등록일	년 월 일
		새긴날	년 월 일
		새긴사람	주소: 성명: 주민등록번호:
		최초사용일	년 월 일
		재료	
		비고	
폐 기 직 인	(인영)	등록일	년 월 일
		폐기일	년 월 일
		폐기사유	마멸 분실 기타()
		폐기방법	소각 이관 기타()
		폐기자	소속: 성명: 직급:
		비고	
비 고			

<별표 3> 별표 삭제